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92

발의연월일: 2025. 5. 13.

발 의 자:이철규·조지연·박상웅

서명옥 · 김기현 · 김선교

박충권 • 서일준 • 조정훈

강승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기는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재화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,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.

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, 전기산업발전기본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, 아직까지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조사·연구, 전기기술의 연구·개발·실증·보급 사업에 관한 출연금및 지원금 지급, 전기산업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등의 업무를수행할 법정단체가 설립 또는 지정되지 않아 지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.

1965년 설립된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부문 표준 품셈 유지관리 등의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 전기산업 경쟁

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·조사업무, 송·변·배전 기능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기계 중심단체로 평가되고 있음.

전기산업계 14개 협·단체도 대한전기협회의 대표성·공공성·전문성 등을 감안해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상 법정단체로지정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상태임.

이에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7조 등).

법률 제 호
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 제목 중 "협회"를 "대한전기산업연합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"를 "대한전기산업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를 설립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"협회"를 각각 "연합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협회의 정관, 설립 인가"를 "연합회의 정관, 설립"으로 한다. 제18조제2항 중 "협회"를 "연합회"로 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한전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(이하 "사단법인 대한 전기협회"라 한다)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 법 제17조에 따른 연합회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,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이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

로 본다.

- ③ 이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- ④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
- ⑤ 이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를 포괄 승계한다. 이 경우 연합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-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·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명의는 이 법 제1 7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의 명의로 본다.
-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 제17조에 따라설립된 연합회가 행하였거나 이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- ⑧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임·직원은 이 법 제17조에 따른 연합회의 임·직원으로 보며,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.
- 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제17

조에 따른 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<u>협회</u> 의 설립 및 운영) ①	제17조(<u>대한전기산업연합회</u> 의 설
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・기관・	립 및 운영) ①
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	
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	
무 수행을 위하여 <u>산업통상자</u>	
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	-대한전기산업연합회(이하 "연
<u>를 설립할 수 있다</u> .	합회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	② <u>연합회</u>
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	③ <u>연합회</u>
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	
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	
한다.	
④ 그 밖에 협회의 정관, 설립	④ <u>연합회의 정관, 설</u>
<u>인가</u> ,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	<u>립</u>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제18조(권한 등의 위임・위탁) ①	제18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	2
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	
공공기관, <u>협회</u> 및 그 밖에 전	<u>연합회</u>
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	
체에 위탁할 수 있다.	